

제330회 임시회
2014. 6. 11(수)

검 토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설 소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문홍열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14년 6월 2일

나. 회부일자 : 2014년 6월 5일

3. 제안이유

현행 조례 내용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 및 토지이용규제심의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객관적인 지정기준 설정이 어려운 특정용도제한지구 삭제(안 제6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특정용도제한 가능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투명성 강화(안 제8조)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 개선(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9조)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용도지구를 삭제하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투명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은 특정 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데, 충북의 경우 청주시 1개소(강서1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으며,
- 타 시도의 경우 ‘08~‘10년까지 관련규정을 삭제하여 특정용도제한 지구를 규제하는 곳은 전국에 충북만 존재하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함.
-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내용에 따라 위원의 위촉요건, 연임가능 횟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며,
-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안건처리기한을 단축조정하고, 회의록 공개시점을 조정하여 위원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음.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간 상충되는 내용없이 간결하게 표현하였음.

* 주거기능 보호 또는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유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검토의견

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국민
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
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함.